

2024년 제1회 남동구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

2024년 제1회 남동구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4년 5월 3일
남동구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



1. 채용분야 및 인원

임용분야	임용직급	임용기간	채용인원	주요 업무 내용
정책지원관	지방행정주사보 (일반임기제)	1년 (주40 시간)	4명	○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자료 수집·조사·연구 ○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- 조례 제정·개정·폐지, 예산·결산 심의 등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- 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서 작성 및 자료 취합·분석 지원 -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-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 - 의원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 개최, 자료 작성 등 지원

-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거나,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면접시험에서의 평정 성적이 차 하위자 순으로 선발할 수 있음.
- 총 근무 기간은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하고, 업무성과가 탁월한 경우 총 근무 기간을 초과하여 추가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. 단, 근무실적평가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재계약하지 않을 수 있음.
- 채용 근무 기간 만료일 이전에도 지방공무원법 제62조(직권면직)에 따라 임용약정 해지 가능

2. 법령상 근거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5(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)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조의2(임기제공무원의 종류)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21조의3(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)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21조의4(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)
-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(행정안전부 예규)
-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(행정안전부 예규)

3. 응시자격 요건

가. 공통요건 (결격사유 등)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
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
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) 등
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
- 국적 : 대한민국
- 지역·성별 : 제한 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- 응시연령

분 야(직급)	응시연령	해당 생년월일
정책지원관 지방행정주사보(일반임기제)	18세 이상	2006.12.31. 이전 출생자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▶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
 2. 대통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(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)
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"협회"라 한다)
-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「상법」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·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·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.
- ④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제2항, 제3항,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나. 개별 자격요건 :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

임용분야	직급	자격기준
정책 지원관	지방행정주사보 (일반임기제)	·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·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·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※ 관련분야 범위 - 국가, 국회, 지방의회, 지방자치단체, *공공기관, 연구소, 대학교(대학원, 부설 연구소 포함), 법률사무실(변호사, 법무사 등)에서 행정, 법무, 예산, 감사, 조사, 분석, 연구, 입법지원 등의 관련 실무경력자 *공공기관 : 경영정보시스템(alio.go.kr) 및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(cleaneye.go.kr)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(경력증명서 상 근무 기간, 부서, 직책,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)

※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,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일반임기제는 퇴직 후 3년, 이 경과 되지 않아야 함.(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5항)

4. 선발 방법

○ 1차 : 서류전형

-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에 대한 기준 적합 여부 심사(적격 또는 부적격)
- ※ 단,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○ 2차 : 면접시험

-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하여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
-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 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전체 면접위원의 평정 점수 합계가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
- ※ 평정 요소 : 공직자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,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성과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
- ※ 불합격기준 : 위원 5명의 과반수가 5개 평정 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'하'로 평정한 경우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평정 요소에 대하여 '하'로 평정한 경우

- 동점자 처리기준 :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 발생 시 면접위원 전체 평정성적(상, 중, 하)을 집계하여 “상”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
 (“상”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, “중”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)
- 추가합격자 결정
 - 최종 합격 된 사람의 임용 포기, 합격 취소, 임용 결격사유,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.
 - 추가합격자의 경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의 차점자로 결정할 수 있음.

5. 시험 일정

응시원서접수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면접시험	최종 합격자 발표
2024. 5. 13.(월) ~ 5. 16.(목) ※ 기간 중 업무시간 내	2024. 5. 22.(수) (예정)	2024. 5월 중 별도 공지	2024. 6월 중 별도 공지

- ※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, 최종합격자 발표는 **남동구의회 홈페이지** (<https://council.namdong.go.kr>) > **의회소식** > **공지사항** 및 **남동구 홈페이지** (www.namdong.go.kr) **소식과알림** > **고시공고** > **남동구 채용공고**에 게시
- ※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하며, 추후 일정은 바뀔 수 있음.
- ※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,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 등을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6.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4. 5. 13.(월) ~ 5. 16.(목) / 3일간 * 15일 공휴일 제외
 - 09:00~18:00(근무시간 내) * 11:30~13:00 제외
- 접 수 처 :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(1층)
-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

- 주소 :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(만수동),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
- 우편 접수 시 응시수수료 또는 우편통상환 동봉  대한민국 '정부수입인자' 사용 불가
- ※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소인분까지만 인정 (등기 발송 요청)
- ※ 우편 접수는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사전에 유선 연락 (032-453-5022)
- ※ 우편 접수 시 응시표는 이메일 발송하오니 응시원서에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시기
바라며, 면접시험 시 출력하여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가족이 대리접수 가능(가족 방문 시 가족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지참)

7. 제출서류

연번	서류항목	비고						
1	응시원서 1부 * (방문접수) 남동구청 1층 민원봉사과(7번창구)에서 수입증지 구입 후 남동구의회 의정팀에 원서 제출 *응시수수료(남동구 수입증지 첨부) <table border="1"> <tr> <td>임용분야</td><td>임용직급</td><td>수수료</td></tr> <tr> <td>정책지원관</td><td>지방행정주사보(일반임기제)</td><td>7,000원</td></tr> </table> * (우편접수) 응시수수료 또는 우체국 우편통상환 동봉 (우편통상환 구입은 금융업무이므로 우체국 마감시간 유의)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해당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응시수수료 면제 ※ 응시수수료는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응시수수료 환불	임용분야	임용직급	수수료	정책지원관	지방행정주사보(일반임기제)	7,000원	서식 1
임용분야	임용직급	수수료						
정책지원관	지방행정주사보(일반임기제)	7,000원						
2	이력서 1부 *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(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미인정)	서식 2						
3	자기소개서 1부	서식 3						
4	직무수행계획서 1부	서식 4						
5	해당 분야 근무 관련 경력(재직)증명서 사본 1부 *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월 이내 발행분을 원칙으로 하며, 발급일자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근무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음을 유의 * 근무기간, 부서, 직책,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* 비상근, 시간제 근무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함 1) 전임 근무의 경우 경력 전부 인정 (3년 전임 : 3년 인정) 2) 시간제 근무의 경우 경력 일부 인정 (4년간 주 20시간 근무 : 2년 인정)	서식 5						

연번	서류항목	비고
	*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, 연락처, 날인(서명)이 있어야 함 *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 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,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* 프리랜서, 자원봉사, 시민단체 등 근무형태·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 제출(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) * 직장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 가능 *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, <u>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일반임기제는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</u>	
6	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	서식 6
7	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	서식 7
8	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* 주민등록초본 제출 시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되도록 발급	서식 8
9	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(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) * 근무 여부 확인을 위하여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	-
10	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1부 *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	☞ 자격 증빙에 필요한 경우 제출
11	관련분야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* 원서접수 시 자격증 원본 지참(확인), 우편 접수자는 면접시험 당일 자격증 원본 지참	
12	기타 채용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(수상실적, 연구실적, 논문, 저서 등) / 논문,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 요지 첨부	

<<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>>

-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(졸업증명서 등)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 첨부.

8. 보수 및 복무

가. 보수

임용분야	임용직급	연 봉	비고
정책지원관	지방행정주사보(일반임기제)	47,157천원	

※ 근거 :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제34조 별표 13,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제35조제3항

※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수당 별도 지급

※ 「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(단,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나. 복무

채용분야	직 급	근무장소	근무시간
정책지원관	지방행정주사보 (일반임기제)	남동구의회 1층 전문위원실	주40시간 (1일 8시간, 주5일)

※ 복무기준 : 「지방공무원복무규정」 및 「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」를 준용하되,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

※ 약정해지 : 「지방공무원법」제62조에 해당 시(업무태만, 근로수행능력 부족,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)

9. 응시자 유의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,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제출한 원본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요청 시 반환하며,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응시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제출 요구한 서류 이외 첨부되는 불필요한 서류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.
- 기재(제출)한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.
-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(또는 임용)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.
-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(응시자가 없을 경우,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원서접수일,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합니다.
☞ 상기사유로 재공고시 기존 서류전형 합격자는 당초 지원서류로 같음
- 본 시험계획 및 면접시험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구의회 홈페이지 공고 또는 유선으로 개별 안내드립니다.
-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거나,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면접시험에서의 평정 성적이 차하위자 순으로 선발할 수 있음

○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안내(지방공무원법 제56조)

- 지방임기제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므로 기존 영리·비영리 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 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채용 절차 및 담당업무·보수 등 관련문의 : 남동구의회 의정팀(032-453-5022)

*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.